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34476
등록일자	2015.9.19.
결재일자	2015.9.2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신성장동력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홍종남	조춘식	권승원	전결 09/21 김용운		
협조자					

- 상권활성화 사업공모로 경쟁력 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

2015. 제2차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계획



2015. 9. 19

강 남 구
(지 역 경 제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제27조, 제2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안전행정부 201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년도부터 적용 																											
추진 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선6기 1차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종합계획(지역경제과-39471호,14.8.25) 2015년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지역경제과9036호,2015.3.10.) 																											
예산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거 :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남구 주요상권, 골목상권, 주민 및 국내외 관광객 																											
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O] [신규:]	<table border="0"> <tr> <td>① 관련부서 협조</td> <td>-----</td> <td>(O)</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td> <td>()</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결림돌</td> <td>-----</td> <td>()</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td> <td>()</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td> <td>()</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td> <td>()</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td> <td>()</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td> <td>()</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td> <td>()</td> </tr> </table>	① 관련부서 협조	-----	(O)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결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O)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결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타 기관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벤트행사, 마케팅지원, 지역특화거리축제 지원, 전통시장이벤트지원 등 : 송파구, 중구, 강동구 등 																											
전문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 강현수 시장경영진흥원 자문위원, 권혁찬 시장경영진흥원 상권연구팀 책임연구원 자문결과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인회는 컨설팅, 시장경영진흥원 공동마케팅사업으로 지원가능하나, 정식 상인회 미등록 상인회(=번영회)의 경우, 구예산 지원의 방법 등으로 상권 활성화 모색 필요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로 경쟁력 있는 상권 조성을 위한-

2015. 2차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계획

상권활성화 사업을 공모, 선정함으로써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고, 상인회와 협·단체, 또는 대학 등과 컨소시엄 구성 참여케 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확보

⇒ 2015.1차 추진실적 : 15개사업 공모→5개사업 선정 35,000천원 지원

I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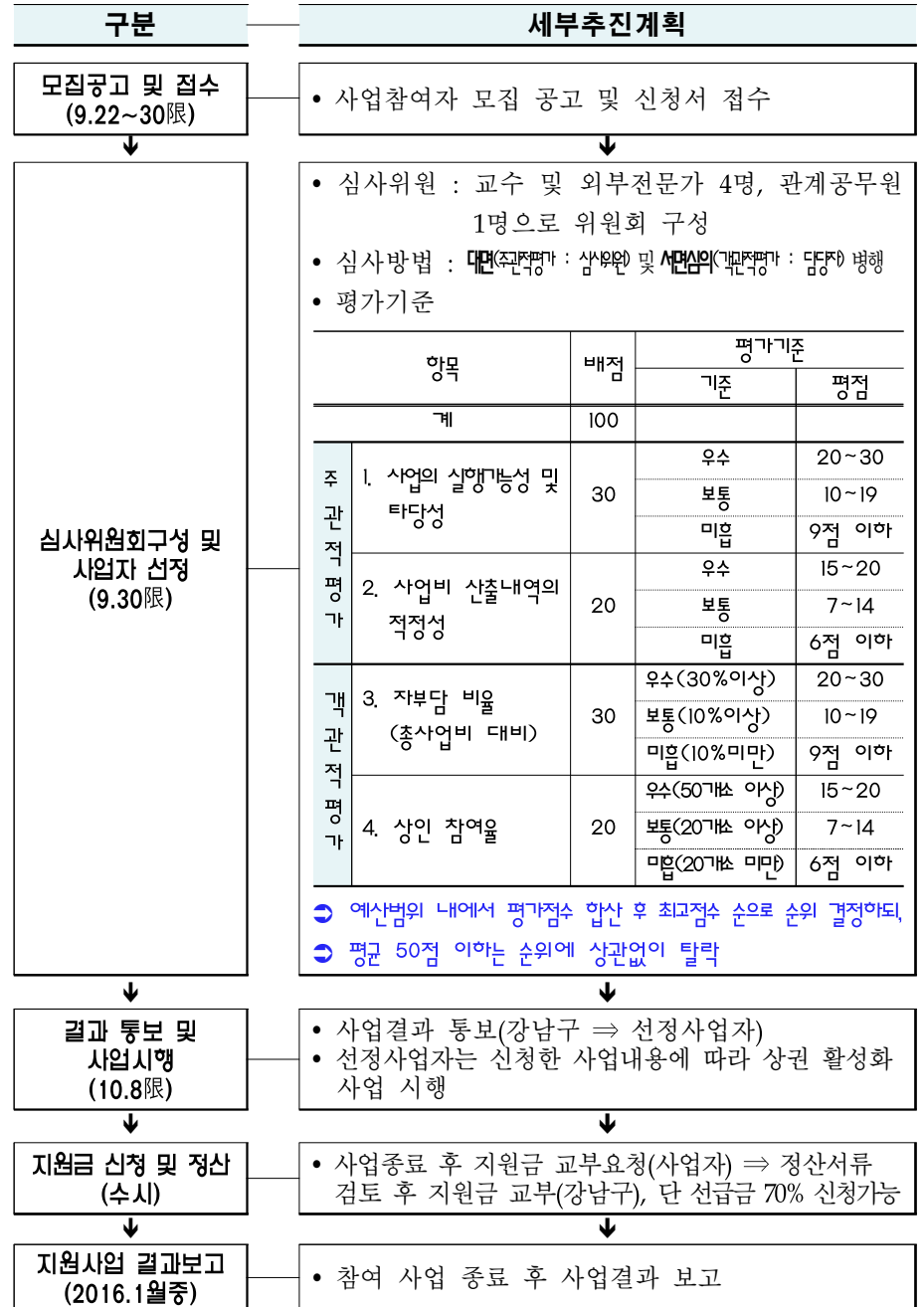
- 사업명 : 강남구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 사업기간 : 2015. 10. 1 ~ 12. 31
- 지원규모 : **5개 사업 내의(사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내)**
(단 우수 제안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초과 지원 가능)
- 지원조건 : 사업별 상인 등 자부담 매칭비율 10%이상 유지
- 지원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 영등전통시장, 개포2동중심상점가, 강남역지하쇼핑센터 상인회 등
-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 (사)압구정로데오, (사)강남웨딩업연합회 등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한복공업협동조합, 웨딩업협동조합 등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관내 상권 번영회 및 특화산업 관련단체 : 삼성음식문화특화거리 상가번영회, 대치상가번영회 등
- 거리축제 또는 상권 활성화 사업 경험이 풍부한 업체
- ※ 대학 또는 상권 활성화 사업 경험이 풍부한 업체 등과 컨소시엄 구성 응모 가능

- 신청방법 : 상인회, 협·단체, 대학 등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신청가능
- 사업비 : 금41,660천원
- 대상사업

사업분야	세부 내용
길거리 축제	▪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플리마켓, 버스킹, 거리 축제 등
이벤트사업	▪ 고객 확대유치를 위한 세일·특가판매·경품행사 등 ▪ 콘테스트, 전시회 개최, 공동쿠폰 발행 및 홍보
홍보사업	▪ 상권 홍보를 위한 영상물·유인물 등 제작 및 송출(배포) ▪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BI 제작 등 On-Off 라인 홍보
특화사업	▪ 패션·뷰티·웨딩 등 특화산업 홍보·마케팅 활동 ▪ 한복·웨딩·의류 패션쇼 또는 박람회 개최·참가 지원

II 세부추진계획



III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금41,660천원
 - 패션·뷰티·웨딩 등 특화산업 및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 41,660천원
 - 심사수당 : 400천원
 - 100,000원 × 4명 = 400,000원
- 예산과목 : 특화거리육성 및 지역경제경쟁력강화,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 상권활성화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IV 행 정 사 항

- 공모사업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 1차 때 심사위원을 기본으로 하되, 결원자에 대해 추가 위촉
-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 철저
- 지역상권 등 특화산업 활성화 사업 관련 산학연 홍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 모집공고문 1부. 끝.

<붙임1>

서울시 강남구 공고 제2015- 호

2015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최근 침체된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관내 상권 상인회 및 관련 단체(업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 9.

강남구청장

1. 사 업 명 : 2015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안내
2. 공모기간 : 2015. 9. 22 ~ 9. 30
3. 선정규모 : 5개 사업 내외(사업당 1000만원 한도내,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
4. 지원조건 : 사업별 상인 또는 신청자 자부담 매칭비율 10% 이상 유지
5. 지원자격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 상인회 나. 민법에 따라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설립한 법인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관내 상권 번영회 및 특화산업 관련단체 마. 거리축제 또는 상권 활성화 사업 경험이 풍부한 업체
※ 상인회, 협·단체, 대학 등과 컨소시엄 구성하여 사업응모 가능

6. 지원대상 사업

사업분야	세부내용
길거리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리 축제<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수길 페스티벌, 압구정 로데오축제, 플리마켓 등※ 기타 상권 활성화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한 거리축제의 경우 지원 가능※ 강남구지원주요내용 : On-Off Line 홍보, 기관간 업무협의, 예산일부 지원 등
이벤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확대유치를 위한 세일·특가판매·경품행사(직접비)<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매고객 대상 경품추첨, 일정금액이상 구매고객 경품지급 등- 행사관련 직접비만 지원, 할인비용 및 특가판매상품 구입비용 지원불가▪ 콘테스트, 전시회 개최, 고객 대상 각종 취미교실(기존시설 활용)<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료, 강사비, 홍보비, 장치비, 인건비 등 직접비만 지원▪ 유치원생 및 청소년 대상 전통시장 체험학습<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림그리기·글짓기대회, 시장 장보기 및 1일 점주 체험 등▪ 공동쿠폰 발행 및 홍보<ul style="list-style-type: none">- 쿠폰인쇄비, 디자인비, 가맹점표시, 홍보비, 쿠폰이용 경품비 등 직접비만 지원- 쿠폰 보상비 제외▪ 기타 이벤트성 사업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 및 송출 ▪ 시장 및 상품 홍보를 위한 전단지 제작·배포비 ▪ 홈페이지 제작, 블로그 제작 및 운영 등 온라인 홍보 ▪ BI·CI개발(로고, 브랜드, 캐릭터), 시장로고송 제작·보급 ▪ 기타 홍보성 사업 ※ 시장홍보용 시장봉투제작, 유니폼 및 앞치마 제작 등은 지원불가
특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고유 특화상품을 활용한 광역마케팅 활동 ▪ 테마골목 브랜드 개발(상호, 상표, 로고 등) ▪ 한복·웨딩·의류 패션쇼 또는 박람회 개최·참가 지원 ▪ 특화상품 개발 등

7. 평가기준 및 방법

항목	배점	평점기준	
		기준	평점
계	100		
1. 사업의 실행가능성 및 타당성	30	우수	20~30
		보통	10~19
		미흡	9점 이하
2.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20	우수	15~20
		보통	7~14
		미흡	6점 이하
3. 자부담 비율	30	우수(30%이상)	20~30
		보통(10%이상)	10~19
		미흡(10%미만)	9점 이하
4. 상인 참여율	20	우수(50개사 이상)	15~20
		보통(20개사 이상)	7~14
		미흡(20개사 미만)	6점 이하

- ㉞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합산 후 최고점수 순으로 순위 결정하되,
- ㉞ 평균 50점 이하는 순위에 상관없이 탈락
- ㉞ 개인적 평가의 경우 평가준별 평점은 참가업체의 해당항목 평가기준 최고 달성실적을 최고점으로 상대 평가함

8. 추진절차

구분	추진일정	비고
모집광고	2015.9.22.~9.30	강남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신청서 접수	2015.9.24.~9.30	강남구청 지역경제과(본관4층)
선정결과 통보	2015.10.8	강남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
보조금 신청 및 교부	2015.10.12.~12.11	선정사업자 ⇄ 강남구
정산보고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까지 (단,2015.12.11.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사업자 → 강남구

9. 신청방법 : 상인회, 협회·단체, 대학 등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신청 가능

10. 제출서류

- 가. 2015. 2차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시행승인 신청서 1부
- 나. 2015. 2차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계획서 1부
- 다. 상인회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1. 신청방법 및 접수·문의처

- 가. 신청방법 :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 나.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우135-705)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본관 4층 홍중남
 - 문의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홍중남(02-3423-5492)

붙임 : 공모사업 신청서 1부. 끝.

2015. 2차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상호명(상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신청사업명			사업분야	
단 위 사 업	총사업비	구 비	협찬금	자부담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총승인신청액	원	원	원	원

'구비'는 강남구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지원결정액 이내

「2015. 2차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 관련,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신청서는 사실만을 기재하고, 제출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 어떠한 제재도 감수한다.
- 총사업비에서 자부담금의 비율이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비율만큼 결정된 지원금을 같은 비율로 감하여 승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아니한다.
- 「2015. 2차 주요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강남구 주요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준수한다.

위와 같이 「2015. 2차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공모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직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사 업 담 당	성 명	직 책
	전 화	휴 대 폰
	F A X	E - m a i l

- 첨부 : 1. <별지 제1-1호> '15.2차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서
 2. 지원사업 전용통장 사본(자부담 입금 내역 포함)
 3.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견적서 또는 계약서 초안(1백만 원 이상 거래 건은 비교 견적서 포함)사본
 ※ 지원대상 사업분야 중 “길거리 축제” 분야는 별도로 ppt 자료 작성 제출

'2015. 2차 지역상권 및 특화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사 업 명 :

소요예산 :

단위: 원

사 업 비	총사업비	구 비	협찬금	자부담
	원	원	원	원
※ 비교				
지 출 내 역	No	세부내역	산출근거	금액
총사업비				원

<작성요령>

- 사업명 : 신청사업명 기재
- 예산소요내역의 세부내역 및 산출근거는 견적서, 계약서 등과 일치하여야 함
- 세부내역은 내역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표기
- 별도 외부지원금이 있을 경우 계획서 하단에 별도 기재

□ 사업내용

사업 목적	○ ○
사업 개요	○ ○
세부추진 계획	

사업 추진 일정	* 사업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단계별 추진일정 기술
참여점포 및 인원	
사업 기대 효과	○ 매출 및 고객 증대 기여도 - - ○ 고객 만족도 - - ○ 상인 만족도 - - ○ 홍보 효과 - -
기타 사항	

<작성요령>

- 사업내용 형식은 계획서 분량에 따라 변경 가능(2매 이상 작성 가능함)
- “길거리축제” 제안의 경우 “행사진행인력운영방안, 행사홍보방안 및 행사안전대책”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할 것
- 사업내용 형식은 계획서 분량에 따라 변경 가능(2매 이상 작성 가능함)

□ 참여점포 현황

No	점포명	주소	대표자	연락처	비고